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. 9. 7 선고 2018가단373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9. 7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 
가. 경남 산청군 C 잡종지 272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5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35㎡에 건립되어 있는 조립식 패널조 패널지붕 사무실을 철거하고,  
나. 위(가) 부분 35㎡를 인도하고,  
다. 2018. 6. 23.부터 위(가) 부분 35㎡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1)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# 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,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**판사박정홍**

별지

1) 청구취지에는 "1, 2, 5, 6, 1의 각 점"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"1, 2, 5, 4, 1의 각 점"의 오기임이 명백하다.